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산림자원법」이 개정('23.6.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맞춰 용어 통일 및 공동연구사업 선정 방법 등을 정비하는 한편,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벌채 제한지역을 꼭 필요한 고시 지역으로 최소화하도록 하고, 시험림 지정 해제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림조림계획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의2)

- 산림조림계획에 포함 될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계획의 수립·변경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나. 공동연구 대상사업 선정 시 공모 외 방법 기준 개선(안 제33조)

-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함

다. 공동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 보고 및 정산체계 개선(안 제34조)

-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연도별 연구개발 종료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토록 함
-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라.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완화(안 제41조)

- 벌채제한지역 중 명승지·유적지 등 산림보호구역과 중복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벌채제한지역을 지정할 경우 꼭 필요한 지역만을 고시하도록 함

마. 시험림 지정해제 할 수 있는 시설에 산림재해예방시설 포함(안 제52조)

- 시험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공용·공공용 시설에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산림조림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림사업의 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
2. 조림사업의 공간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연구·개발사업”을 각각 “연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이를”을 “공동연구개발과제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공동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공동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 중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책임자”를 “공동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연구비”를 각각 “연구개발비”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공동연구개발사업”을 “공동연구개발과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연구비”를 “연구개발비”로 한다.

③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공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고
2. 연구개발비의 정산 : 공동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

제41조제1항 중 “명승지·유적지·휴양지·유원지 등 자연경관 보존을”을 “산사태·토사유출 등 재해 방지를”로, “지방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른 산사태 위험지역”을 “지방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면과”를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와”로 한다.

제5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부 칙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산림조림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u> <u>1. 조림사업의 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u> <u>2. 조림사업의 공간정보관리 에 관한 사항</u> <u>② 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제33조(공동연구의 대상사업)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분야의 신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u>연구</u> ·	제33조(공동연구의 대상사업) ①- ----- ----- ---. 1. ----- ----- <u>연구개</u>

개발사업

2. 임업과 다른 산업분야와의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실용화
연구·개발사업

3. ~ 6. (생략)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모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공동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공동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하여금 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공동연구개발협약의 체결)

①산림청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책임자와 공동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발사업

2. -----

연구개발사업

3. ~ 6. (현행과 같음)

②-----

----- 공동연구개발과제를
를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9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등 공
모 외의 방법으로 공동연구개
발과제를 -----.

제34조(공동연구개발협약의 체결)

①-----
----- 공동연구개발과제
의 연구책임자-----

-.

②-----

--.

1. (생략)
2. 연구비의 지급시기 및 방법
3. 연구비의 사용 및 관리
4. ~ 8. (생략)
9. 그 밖에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연구비를 지급받은 공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책임자는 회계연도가 종료하거나 해당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3월 이내에 연구비 집행실적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구비의 지급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

1. (현행과 같음)
2. 연구개발비-----
3. 연구개발비-----
4. ~ 8. (현행과 같음)
9. ----- 공동연구개발과제-----

③연구개발비를 -----공동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연구개발비의 사용 내역 :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고

2. 연구개발비의 정산 : 공동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

④-----
연구개발비-----

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①법 제3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명승지·유적지·휴양지·유원지 등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른 산사태 위험지역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입목벌채 제한지역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도면과 지번·면적을 명시하여 고시하고,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하거나 고시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2조(시험림의 지정 등) ① (생략)

-----.

제41조(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①-----

산사태·토사유출 등 재해 방지를 -----
----- 지방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

-----.

②-----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와 ----.
-----.

제52조(시험림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4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u>4.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방시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자원과	
연 락 처	(042) 481 - 4044